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
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서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경과 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구 등 법령의 자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별표 1)
- 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에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허용한 폐기물운반선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중 “제1기준을 초과하는”을 “제2기준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을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으로, “배출해야 한다”를 “배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평가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는 자가 해야 하며, 정밀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1호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u>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u> 1. ~ 3. (생략) 비고 1. 위 표의 제1기준 및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u>제1기준을 초과하는</u>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u>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u> 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u>배출해야 한다.</u> (후단 신설) 다.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2. ~ 3. (생략)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u>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u> 1. (생략) 비고 1. ~ 3. (생략) 4.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해양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 ~ 3. (생략)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u>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u> 1. ~ 3. (현행과 같음) 비고 1. 위 표의 제1기준 및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u>제2기준 이상인</u>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u>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u> 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u>배출할 수 있다.</u> 이 경우 정밀평가는 폐기물을 <u>해양으로</u> 배출하려는 자가 해야 하며, 정밀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u>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u> 1. (현행과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306